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9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이연희·문진석·복기왕

윤종군 • 민홍철 • 한준호

염태영 · 송기헌 · 김기표

전용기 • 박홍배 • 정준호

안태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연장없이 일몰됨.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연대의 '2023년 안전운임제 일몰 후 조합 원의 노동과 안전, 생활환경 변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한국교통 연구원의 '2022 화물운송시장 동향 연간보고서', 국토교통부가 안전운 임위원회에 제출한 원가 조사 자료를 한 언론이 교차분석한 결과 화 물기사들의 월 수입은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136만원 이상이 감소했 으며, 노동시간은 월 44.7시간이 늘어났다고 분석한 바 있음.

이에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는 품목외에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 품목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운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의4제2항제3호 신설,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여 결정한 운송품목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정 혀 개 아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생 략) 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 · 의결 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 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 여야 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여 결 <신 설> 정한 운송품목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 <삭 제> 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 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 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 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 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